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 실제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요령

<19.12.31. 보험급여관리부>

1 검토 배경

- 근로자의 실제 지급된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산재법상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 “소득 자료가 전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 마련하여 업무의 통일성 제고 필요
- *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2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주요 경과

1983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제도 도입

2004년: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정

- ('83년 ~ '94년) 실제 임금자료가 있는 경우 근기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법상 특례임금 비교 후 높은 금액 적용(시행령)
- ('95년 ~ '07년) 산재법상 특례임금 적용(시행령 개정하여 비교조항 삭제)
- ('08년 ~ '12년) 실제 임금자료가 있는 경우 근기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법상 특례임금 비교 후 높은 금액 적용(지침)
- ('13년 ~ 현재) 실제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소득자료(국세청 소득신고 금액 등)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를 활용 근기법상 평균임금 산정 후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적용(지침 개정)

3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2조 · 제36조, 시행령 제25조

4 평균임금산정 기준

- 가. (원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이하 “특례고시”라 함)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

- *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이 특레고시 이전이라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특레고시를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레고시 제2015-77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나. 근로기준법 특레고시에 따른 적정임금 산정 방법

- 실제 임금을 추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① 특레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라 동종 근로자 임금을 조사하여 적정임금 산정
 - ② 동종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상 임금을 적용
- **(동종 근로자 임금조사)**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전국지역으로 비교는 불가)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조사
 - * 노동보험 288.6 사업장별 재해자내역에서 해당근로자가 소속했던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의 재해근로자 현황(해당근로자 퇴직연도의 재해자)을 조회하여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 중 근속기간, 성별, 연령 등이 유사한 근로자 조사 (붙임1 참고)
- ※ **(유의사항)** 동일 직종 근로자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인 경우 실제 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실제 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평균임금은 동종근로자 임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종 근로자가 없는 경우) 조사결과 동종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 상의 임금* 적용

*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규모가 동일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붙임2 참고)

다. 산재보험법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른 산정 방법: 현행과 동일

5 행정사항

-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처리되는 건부터 적용
 - * 소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심사·재심사 및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원처분 취소 처분 후 재처분
 - * 원처분 취소 처분 후 산재심사실, 재심사위원회, 송무부 등에 관련문서 송부
- 기존 지침 또는 질의회시 중 이 지침에 반하거나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 지침을 적용하고, 기존 지침 및 질의회시 내용 폐기

6 향후계획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지침 개정(예정시기: '20.3월)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전산 프로그램 개선(예정시기: '20.1월)